##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4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권영진·김정재·엄태영

이상휘 • 정점식 • 조지연

김상훈 · 김기웅 · 이만희

서천호 • 윤영석 • 김미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 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4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u>「공공</u>	, _ 「고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_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	"공공기관"이라 한다), 「과학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을 말한다.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u>관,</u>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